

# 임산부 · 18세 미만자 야간 및 휴일근로 시행에 대한 근로자 대표 협의서

근로자대표	이근영
생년월일	1986.12.11.

임산부 · 18세 미만 근로자에게 야간 및 휴일근로를 시킬 수 없으나, 근로자의 청구 및 동의가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후에 근로자에게 야간 및 휴일근로를 시행하는 것을 협의합니다.

### 근로기준법

#### 제70조(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)

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
2.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
3.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

③ 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.

**2020. 10. 12.**

근로자대표 : 이근영 (서명)